

##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

신청구분	[ ] 지역·지구 등 협의 [ ] 산지전용허가 [ ] 산지일시사용허가			
산지내역	번지 외 필지			
	계	임업용산지	공익용산지	준보전산지
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
신청목적				

### 조 사 결 과

입목축적	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(A)	해당 시·군·구의 ha당 입목축적(B)	기준 적합여부	
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	
평균 경사도	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	기준 경사도	기준 적합여부	
	도	도		
표고 조사서	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	산정부 표고	기준 표고	기준 적합여부
	m	m		

기타사항

종합의견

「산지관리법」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산지보전협회장  
· 한국치산기술협회장

직인